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시범 중재 조항(1)

무릇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무역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 신청 시 무역중재위원회의 유효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에 모두 구속력을 갖는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시범 중재 조항(2)

무릇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무역중재위원회) _____
분회/중재센터에 제출하여, 중재 신청 시 무역중재위원회의 유효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 쌍방에 모두 구속력을 갖는다.

목 차

- 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규칙
- ② 부록 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중재센터 명단
- ③ 부록 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비용 표준
- ④ 부록 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긴급 중재인 절차
- ⑤ 국무원에서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명칭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재 규칙을
수정하는 데에 관한 답신
- ⑥ 국무원에서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명칭을 대외경제무역
중재위원회로 변경하는 데에 관한 통지
- ⑦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데에 관한 결정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규칙 (2024 년판)

(2023 년 9 월 2 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에서 수정 및 통과)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제 1 장	총 칙	7
	제 1 조 중재위원회	7
	제 2 조 조직 및 직책	7
	제 3 조 사건 접수 범위	9
	제 4 조 규칙의 적용	9
	제 5 조 중재 협의	10
	제 6 조 중재 협의 및/혹은 관할권에 대한 이의	10
	제 7 조 중재지	11
	제 8 조 송달 및 기한	11
	제 9 조 성실과 신용	12
	제 10 조 이의 포기	12
제 2 장	중재 절차	13
	제 1 절 중재 신청, 답변, 반소	13
	제 11 조 중재 절차의 시작	13
	제 12 조 중재 신청	13
	제 13 조 사건의 접수와 처리	14
	제 14 조 다중 계약의 중재 및 중재 중 계약 추가	15
	제 15 조 답변	15
	제 16 조 반소	16
	제 17 조 중재 청구 혹은 반소 변경	17
	제 18 조 당사자 추가	17
	제 19 조 병합 중재	19
	제 20 조 중재 문서의 제출과 교환	19
	제 21 조 중재 문서의 제출 방식 및 부수	20
	제 22 조 중재 대리인	20
	제 23 조 보전 조치 및 임시 조치	21
	제 2 절 중재인 및 중재재판부	21
	제 24 조 중재인의 의무	21
	제 25 조 중재재판부의 인원 수	22
	제 26 조 중재인의 선정 또는 지정	22
	제 27 조 3 인 중재재판부의 구성	23
	제 28 조 단독 중재재판부의 구성	25
	제 29 조 다수 당사자 중재재판부의 구성	25
	제 30 조 중재인 지정 시 고려 사항	26
	제 31 조 정보 공개	26

제 32 조	중재인의 회피	26
제 33 조	중재인의 교체	28
제 34 조	다수의 중재인이 중재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	28
제 3 절	심리(審理)	29
제 35 조	심리 방식	29
제 36 조	법정 개최 장소	30
제 37 조	개정 심리	30
제 38 조	기밀	31
제 39 조	결석 심리	32
제 40 조	재판 기록	32
제 41 조	증거 제시	33
제 42 조	증거 검토	34
제 43 조	중재재판부의 사실 조사 및 증거 수집	34
제 44 조	전문가 보고서 및 감정 보고서	35
제 45 조	절차 중지	35
제 46 조	신청 철회 및 사건 취하	36
제 47 조	중재와 조정을 상호 결합	36
제 48 조	제 3 자 자금 지원	38
제 49 조	중간 판결	39
제 50 조	조기 기각 절차	39
제 3 장	판 결	40
제 51 조	판결 기한	40
제 52 조	판결	41
제 53 조	부분적 판결	43
제 54 조	판결문 초안의 심사	43
제 55 조	비용 부담	43
제 56 조	판결문의 정정	44
제 57 조	보충 판결	44
제 58 조	판결의 이행	45
제 4 장	간이 절차	45
제 59 조	간이 절차의 적용	45
제 60 조	사건의 접수	46
제 61 조	중재재판부의 구성	46
제 62 조	답변서 및 반소	46
제 63 조	심리 방식	47
제 64 조	법정 심리	47
제 65 조	판결을 내리는 기한	47
제 66 조	절차 변경	48
제 67 조	본 규칙의 기타 조항의 적용	48
제 5 장	국내 중재에 관한 특별 규정	48
제 68 조	본 장의 적용	48
제 69 조	사건의 접수	49
제 70 조	중재재판부의 구성	49
제 71 조	답변 및 반소	49

제 72 조 법정 심리.....	50
제 73 조 재판 기록.....	50
제 74 조 판결을 내리는 기한.....	50
제 75 조 본 규칙의 기타 조항의 적용.....	51
제 6 장 홍콩 중재에 관한 특별 규정	51
제 76 조 본 장의 적용.....	51
제 77 조 중재지 및 절차 적용 법률.....	51
제 78 조 관할권 결정에 관한 사항.....	52
제 79 조 중재인의 선정 또는 지정	52
제 80 조 임시 조치 및 긴급 구제	52
제 81 조 판결문의 도장.....	53
제 83 조 본 규칙의 기타 조항의 적용.....	53
제 7 장 부 칙	53
제 84 조 중재 언어.....	53
제 85 조 중재 비용 및 실제 비용	54
제 86 조 책임 제한.....	55
제 87 조 규칙의 해석	56
제 88 조 규칙의 시행	5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중재위원회

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간칭 “중재위원회”라 함)의 원래 명칭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였고, 동시에 “중국국제상회중재원”이라는 명칭도 사용했었다.

2. 당사자가 중재협약서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에 제출하여 중재함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회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함 또는 중재원에 제출하여 중재함으로 명시한 것이나, 혹은 중재위원회의 원래 명칭을 중재기관으로 명시한 것은 모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 조 조직 및 직책

1.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본 규칙에서 부여한 직책을 이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 위임에 따라 위원장의 직책을 이행할 수 있다.

2. 중재위원회는 중재원을 설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부위원장과 중재원 원장의 지도 하에 본 규칙에서 규정한 직책을 이행한다.

3. 중재위원회는 베이징에 설치한다. 중재위원회는 분회 또는 중재센터를 설치한다(본 규칙 부록 1). 중재위원회 분회/중재센터는 중재위원회의 출장 기관으로, 중재위원회의 권한 위임에 따라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중재 사건을 관리한다.

4. 분회/중재센터는 중재원을 설치하여, 분회/중재센터 중재원 원장의 지도 하에 본 규칙에서 규정한 중재위원회 중재원의 직책을 이행한다.

5. 중재 사건을 분회/중재센터에서 관리하는 경우, 본 규칙에서 규정한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이행해야 하는 직책은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위임한 분회/중재센터 중재원 원장이 이행한다.

6. 당사자는 분쟁을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 분회/중재센터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기로 약정한 경우,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리한다. 분회/중재센터에 제출하여 중재하기로 약정하거나 또는 법정 심리 장소나 중재지를 분회/중재센터가 위치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할 구역 내로 약정한 경우, 해당 분회/중재센터 중재원에서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리한다. 단,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특정 분회/중재센터에 관련 사건을 관리하도록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협약서에서 약정한 분회/중재센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권한 위임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리한다. 분쟁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7.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약정과 청구에 따라 임시 중재에 관리 및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는 중재 규칙에 적용되는 상담 안내 서비스, 중재인을 지정하거나/중재인이 회피해야 할 사안의 결정, 법정 심리 서비스, 판결 초안 검토, 중재인 보수 관리 대행 등 중재 서비스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단, 당사자 간의 약정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또는 중재 절차에 적용할 법의 강제성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3 조 사건 접수 범위

1.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약정에 근거하여 계약성 또는 비계약성 성격의 경제무역 등 영역의 분쟁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2. 상기 조항에서 언급한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1) 국제 또는 외국 관련 분쟁 사건
 - 2)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과 관련된 분쟁 사건
 - 3) 국내 분쟁 사건

제 4 조 규칙의 적용

1. 본 규칙은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중재센터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2.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기로 약정한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기로 약정했지만, 본 규칙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중재 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따른다. 단, 그 약정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또는 중재 절차에 적용할 법의 강제성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가 다른 중재 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이에 상응하는 관리 직책을 이행한다.
4. 당사자가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기로 약정했으나 중재 기관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전문 중재 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따른다. 단, 그 분쟁이 해당 전문 중재 규칙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규칙을 적용한다.

제 5 조 중재 합의

1. 중재 합의란 당사자가 협약에 명시한 중재 조항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달성한 중재 제출에 관한 서면 합의를 말한다.

2. 중재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서면 형식에는 협약서, 편지, 전보, 전송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 등, 내용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형태가 포함된다. 중재 신청서와 중재 답변서의 교환 과정에 한 당사자가 중재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중재 합의에 적용할 법이 중재 합의의 형식 및 효력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4. 협약서의 중재 조항은 협약의 기타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인 조항으로 간주되며, 협약에 부속된 중재 합의도 협약의 기타 조항과 분리된 독립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협약의 변경, 해제, 종료, 양도, 효력 상실, 무효, 효력 미 발생, 철회 및 성립 여부는 중재 조항이나 중재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6 조 중재 합의 및/혹은 관할권에 대한 이의

1. 중재위원회는 중재 합의의 존재, 효력 및 중재 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 재판부가 구성된 후, 중재위원회는 중재 재판부에 관할권 결정을 위임한다.

2. 중재위원회가 표면적 증거에 근거하여 유효한 중재 협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중재위원회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중재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중재위원회가 표면적 증거에 근거하여 내린 관할권 결정은 중재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발견한 것과 표면적인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 및/혹은 증거에 근거하여 다시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중재재판부는 관할권 결정을 내릴 때, 중재 절차 진행 중에 별도로 내릴 수도 있고 또는 판결서에 포함하여 함께 내릴 수도 있다.

4. 중재 협의 및/혹은 중재 사건의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재판부의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서면으로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실질적인 답변이 있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중재 절차에 적용할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중재 협의 및/혹은 중재 사건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중재 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상기 관할권에 대한 이의 및/혹은 결정에는 중재 사건의 주체 자격에 대한 이의 및/혹은 결정이 포함된다.

7.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재판부가 관할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사건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 철회 결정은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내리고,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재판부가 내린다.

제 7 조 중재지

1. 당사자가 중재지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따른다.

2. 당사자가 중재지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사건을 관리하는 중재위원회 혹은 그 분회/중재센터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정한다. 중재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 곳을 중재지로 정할 수도 있다.

3. 중재 판결은 중재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송달 및 기한

1. 중재와 관련된 모든 문서, 고지서, 자료(이하 간칭 “중재 문서”라 한다)는 직접 전달, 등기 우편, 특급 배송, 팩스, 전자 방식 및 기타 송달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수단 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이나

중재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방식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전자 방식 송달에는 당사자가 약정/지정한 전자 메일, 기타 전자 통신 주소 및 중재위원회의 정보화 저장 시스템,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 형식의 송달이 포함된다.

2. 중재 문서는 전자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3. 중재 문서는 당사자 또는 그의 중재 대리인이 제공한 주소나 당사자가 약정한 주소로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의 중재 대리인이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주소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중재 대리인이 제공한 주소로 송달한다.

4. 한쪽 당사자 또는 그의 중재 대리인에게 발송하는 중재 문서는, 직접 수령인에게 전달하거나, 수령인의 영업지, 등록지, 주소지, 상주 거주지 또는 통신 주소로 발송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찾아봐도 상기 임의의 지점을 찾을 수 없거나,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등기 우편, 특급 배송 혹은 공증 송달, 위탁 송달 및 유치 송달을 포함하여 송달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수령인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영업지, 등록지, 주소지, 상주 거주지 또는 통신 주소로 송달한 것은 모두 유효한 송달로 간주된다.

5. 본 규칙에서 규정한 기한은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중재원으로부터 송달받거나 송달받아야 하는 중재 문서의 수령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 9 조 성실과 신용

중재 참여자는 중재 절차를 진행하면서 성실과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이의 포기

한쪽 당사자가 본 규칙이나 중재 협의에 규정된 조항이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재

절차에 참여하거나 또는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거나, 혹은 유효한 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리에 불참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때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중재 절차

제 1 절 중재 신청, 답변, 반소

제 11 조 중재 절차의 시작

중재 절차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이 중재 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시작된다. 신청인이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 중재위원회의 온라인 사건 접수 시스템을 통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 절차는 가장 먼저 수령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제 12 조 중재 신청

1. 당사자가 본 규칙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때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서명/또는 날인한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전자 통신 방식 포함).

② 중재 신청의 근거가 되는 중재 협의서.

③ 사건의 경과와 분쟁의 요점.

④ 신청인의 중재 청구서.

⑤ 중재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2) 중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이 청구하는 사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 및 기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중재위원회에서 정한 중재 비용 표준에 따라 중재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2. 중재 협의서에 중재 전에 협상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약정한 경우, 협상이나 조정을 거친 후 중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하고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중재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단, 적용되는 법률이나 중재 협의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반대 규정을 내린 경우는 제외된다.

제 13 조 사건의 접수와 처리

1.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 발생 이전 또는 분쟁 발생 이후에 달성한,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재하기로 합의한 중재 협의서와 한쪽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근거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2.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수령한 후, 심사를 거쳐 중재 신청 수속이 완전하다고 판단되면, 중재 고지서, 중재위원회 중재 규칙, 중재인 명단을 각각 1 부씩 양측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도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3.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심사를 거쳐 중재 신청 수속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중재 신청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중재 신청 수속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보관되지 않는다.

4. 중재위원회에서 사건을 접수한 후,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사건 비서를 1명 지정하여, 중재 사건의 절차 관리를 협조하게 해야 한다.

제 14 조 다중 계약의 중재 및 중재 중 계약 추가

1. 신청인은 여러 계약에 따른 분쟁을 단일 중재 사건으로 통합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여러 계약이 주종 계약 관계에 있거나, 여러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법적 관계의 성격도 동일하거나, 또는 여러 계약의 대상이 연관 관계에 있다.

(2) 여러 계약의 분쟁이 동일한 거래 또는 동일한 거래 시리즈에서 발생했다.

(3) 여러 계약의 중재 합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호환 가능하다.

2. 동시에 상기 제 1 조의 (1), (2), (3)조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은 중재 절차 진행 중에 계약 추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신청이 너무 늦어 중재 절차의 정상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계약을 추가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다.

3. 상기 제 1 조와 제 2 조의 절차 사항은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결정한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계약 추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제 15 조 답변

1. 피신청인은 중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답변 제출 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중재재판부에서 답변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결정한다.

2. 답변서는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서명/또는 날인하며, 다음 내용 및 그에 따른 첨부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1)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전자 통신 방식 포함).

(2) 중재 신청서에 대한 답변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3) 답변에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 및 기타 증명 서류.

3. 중재재판부는 기한이 지난 답변서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4.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중재 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6 조 반소

1.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할 경우, 중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내에 서면 형식으로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반소 제출 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중재재판부에서 반소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결정한다.

2.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할 때는 그 반소 신청서에 구체적인 반소 사항 및 반소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증거 자료 및 기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할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정한 중재 비용 표준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중재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소 중재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반소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피신청인의 반소 제기 수속이 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측 당사자에게 반소 접수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신청인은 반소 접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내에 피신청인의 반소에 대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답변 제출

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중재재판부에서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결정한다.

5. 중재재판부는 기한이 지난 반소와 반소 답변서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6.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반소에 대해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중재 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7 조 중재 청구 혹은 반소 변경

신청인은 중재 청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도 반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재재판부는 변경 신청의 시기가 너무 늦어 중재 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청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8 조 당사자 추가

1. 중재 절차 진행 중, 한쪽 당사자는 표면적으로 당사자 추가에 구속력이 있는 중재 협의서를 근거로 중재위원회에 당사자 추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당사자 추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된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는 당사자 추가 신청을 받은 날을 해당 추가 당사자에 대한 중재 시작일로 간주한다.

2. 당사자 추가 신청서에는 현재 중재 사건의 사건 번호,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당사자 추가의 근거가 되는 중재 협의서, 사실과 이유, 그리고 중재 청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당사자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신청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 및 기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추가 절차에 있어 중재 계약서 및/혹은 중재 사건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 규칙 제 6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 결정을 내린다.

4. 당사자 추가 절차가 시작된 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중재 절차의 진행을 결정한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재판부가 중재 절차의 진행을 결정한다.

5.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경우, 본 규칙의 당사자 선정 관련 규정 혹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중재인을 지정하는 규정이 피추가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중재재판부의 구성은 본 규칙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당사자 추가를 결정하는 경우, 중재재판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재재판부의 구성을 포함한 중재 절차에 대한 피추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피추가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중재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양측 당사자는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거나 혹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중재인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 중재재판부의 구성은 본 규칙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 본 규칙의 당사자 답변서 및 반소 제출에 관한 규정은 피추가 당사자에게도 적용된다. 피추가 당사자가 답변서 및 반소를 제출하는 기한은 당사자 추가 중재 통보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7. 사건에 관련된 중재 협의서가 표면적으로 피추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거나 또는 당사자로 추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추가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제 19 조 병합 중재

1.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본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중재 사건을 하나의 중재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각 사건의 중재 청구가 동일한 중재 협의서를 근거로 제출된 경우.

(2) 각 사건의 중재 청구가 여러 계약의 중재 협의서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지만, 이들 계약이 주종 관계에 있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법적 관계의 성격이 동일하거나, 또는 계약의 대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여러 계약의 중재 협의서 내용이 동일하거나 호환 가능한 경우.

(3) 모든 사건의 당사자가 병합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

2. 상기 제 1 조항에 근거하여 병합 중재를 결정할 때, 중재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의견과 관련 중재 사건 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고려 사항에는 여러 사건의 중재인 선정 또는 지정 사안도 포함된다.

3. 각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합된 중재 사건은 가장 먼저 시작된 중재 사건에 병합된다.

4. 중재 사건이 병합된 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절차 진행을 결정하며,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재판부가 중재 절차 진행을 결정한다.

제 20 조 중재 문서의 제출과 교환

1. 당사자의 중재 문서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중재 절차 진행 중에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하는 중재 문서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중재재판부 및 당사자에게 발송하거나 전달한다. 단,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며 동시에 중재재판부의 동의를 거쳤거나 혹은 중재재판부에서 별도로 결정지은 것은 제외한다.

제 21 조 중재 문서의 제출 방식 및 부수

1. 당사자의 중재 신청서, 답변서, 반소장 및 증거 자료와 기타 중재 문서는 전자 방식으로 먼저 제출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중재위원회 중재원이나 중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한 종이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자 문서와 종이 문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당사자가 종이 문서로 제출할 경우, 동일한 문서를 5 부 제출해야 한다. 여러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수를 추가해야 하며, 당사자가 보전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부수를 추가해야 한다. 중재재판부의 구성원이 1 명일 경우, 그에 상응하게 부수를 2 부 줄인다.

제 22 조 중재 대리인

1. 당사자는 중국 및/혹은 외국의 중재 대리인을 위임하여 관련 중재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그의 중재 대리인은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위임장을 관련 당사자와 중재재판부에 전달해야 한다.

2.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 당사자가 중재 대리인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은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인의 회피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상황, 중재재판부의 사건 중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재인이 당사자 대리인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에는 새로운 중재 대리인이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제 23 조 보전 조치 및 임시 조치

1. 당사자가 보전 조치를 신청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보전 조치 신청을 당사자가 지정한 관할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당사 0 자의 청구에 따라 보전 조치 신청을 중재 고지서 발송 전에 상기 법원에 먼저 전달할 수 있다.

2. 적용되는 법률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당사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긴급 중재원 절차》(본 규칙 부록 3)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긴급 임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중재인은 필요하거나 적절한 긴급 임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긴급 중재인의 결정은 양측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3. 한쪽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중재재판부는 적용되는 법률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근거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임시 조치를 청구한 한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증을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제 2 절 중재인 및 중재재판부

제 24 조 중재인의 의무

중재인은 어느 한쪽의 당사자도 대표하지 않으며, 각 당사자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각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중재인은 지정/선정을 수용한 다음, 본 규칙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중재 절차를 부지런히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25 조 중재재판부의 인원 수

1. 중재재판부의 중재인은 1 명 또는 3 명으로 구성된다.
2.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본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재판부의 중재인은 3 명으로 구성된다.

제 26 조 중재인의 선정 또는 지정

1.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중재센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중재인 명단을 작성한다.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재인 명단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
2.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중재인 명단 외의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중재인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후 중재인을 맡을 수 있다.
3. 중재재판부는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다. 단,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당사자들이 약정한 재판부 구성 방식에 불공평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현상이 존재하거나 혹은 당사자가 권리를 남용하여 중재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성 원칙에 따라 재판부 구성 방식을 확정하거나 중재재판부의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 27 조 3 인 중재재판부의 구성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 통보를 받은 후 15 일 내에 각각 중재인 1 명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인을 1 명 지정하도록 위탁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의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중재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인을 지정한다.

2. 세 번째 중재인은 피신청인이 중재 통보를 받은 후 15 일 내에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정을 위탁해야 한다. 세 번째 중재인은 중재재판부의 주심 중재인이 된다. 양측 당사자가 위의 기한 내에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주심 중재인을 지정한다.

3. 양측 당사자는 각자 선정한 2 명의 중재인이 공동으로 주심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이 2 명의 중재인은 선정된 후 7 일 내에 공동으로 주심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주심 중재인 지정을 위탁해야 한다. 위의 기한 내에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주심 중재인을 지정한다.

4. 양측 당사자는 각각 주심 중재인 후보자로 1-5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상기 제 2 조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양측 당사자의 후보자 명단에 동일한 후보자가 1 명 있을 경우, 그 후보자는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주심 중재인이

된다. 동일한 후보자가 1 명 이상일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동일한 후보자 중 1 명을 주심 중재인으로 확정한다. 이 주심 중재인은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주심 중재인이 된다. 후보자 명단에 동일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자 명단 외의 인물에서 주심 중재인을 지정한다.

5. 양측 당사자가 약정했거나 공동으로 청구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3 명의 주심 중재인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지명된 후보자의 명단을 받은 후 7 일 내에 주심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주심 중재인을 지정/선정한다.

(1) 각 당사자는 반대하는 후보자 1 명 또는 여러 명을 제외하고 지명 명단에서 남은 후보자 명단을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제출할 수 있다.

(2)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명단에 동일한 후보자가 1 명 있는 경우, 이 후보자는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주심 중재인이 된다.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명단에 2 명 혹은 2 명 이상의 동일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중 1 명을 주심 중재인으로 확정한다. 이 주심 중재인은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주심 중재인이 된다. 양측 당사자가 동일한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명단 외의 중재인 가운데서 주심 중재인을 지정한다.

제 28 조 단독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재판부가 1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본 규칙 제 27 조 제 2 조항, 제 4 조항, 제 5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1 명 선정하거나 지정한다.

제 29 조 다수 당사자 중재재판부의 구성

1. 중재 사건에 2 명 또는 2 명 이상의 신청인 및/혹은 피신청인이 있을 경우, 신청인 측 및/혹은 피신청인 측은 각자 협의하여 각 측에서 공동으로 중재인 1 명을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인 1 명을 지정하도록 위탁해야 한다.

2. 주심 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은 본 규칙 제 27 조 제 2 조항, 제 4 조항, 제 5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신청인 측 및/혹은 피신청인 측이 본 규칙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심 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을 선정할 때는 각 측에서 공동으로 협의하여 선정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인 측 및/혹은 피신청인 측이 중재 통보를 받은 후 15 일 내에 각 측에서 공동으로 중재인 1 명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각 측에서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인 1 명을 지정하도록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3 명의 중재재판부 중재인을 지정하고, 그 가운데서 1 명을 주심 중재인으로 확정한다.

제 30 조 중재인 지정 시 고려 사항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을 지정할 때, 분쟁에 적용할 법률, 중재지, 중재 언어, 당사자의 국적, 분쟁 유형 및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 31 조 정보 공개

1. 선정되거나 지정된 중재인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사실이나 상황을 공개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2. 중재 절차 진행 중 공개해야 할 사실이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재인은 즉시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3. 중재인의 진술서 및/혹은 공개한 정보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제출되는 동시에 각 당사자 및 기타 중재재판부 구성원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제 32 조 중재인의 회피

1. 당사자가 중재인의 진술서 및/혹은 서면 공개를 받은 후, 공개된 사실이나 상황을 이유로 해당 중재인의 회피를 요구하는 경우, 중재인의 서면 공개를 받은 후 10 일 내에 서면으로 해당 중재인의 회피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중재인 회피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더는 공개한 사항을 이유로 해당 중재인의 회피를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선정되거나 지정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이유로 의심을 가질 경우, 서면으로 해당 중재인의 회피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중재인이 회피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 및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3. 중재인의 회피 청구는 재판부 구성 통보를 받은 후 15 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5 일 이후에 중재인이 회피해야 할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사유를 알게 된 후 15 일 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단, 마지막 재판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4. 당사자의 중재인 회피 청구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 피회피 청구 중재인 및 중재재판부의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5. 한쪽 당사자가 중재인의 회피를 청구하고 다른 한쪽 당사자가 회피 청구에 동의하거나, 피회피 중재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사건의 중재인 직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중재인은 더 이상 이 사건의 중재인으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 하디낭 상기 상황은 당사자가 제출한 회피 이유가 성립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6. 상기 제 5 조항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중재인의 회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7.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인의 회피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피회피 청구 중재인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33 조 중재인의 교체

1. 중재인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 규칙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본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중재인의 교체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중재인도 자발적으로 중재인 직무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재인의 교체 여부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3. 중재인이 회피 또는 교체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지정하던 방식으로,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대체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대체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대체 중재인을 지정한다.

4. 중재인을 재선정하거나 재지정한 후, 중재재판부는 사건의 재심리 여부 및 재심리 범위를 결정한다.

제 34 조 다수의 중재인이 중재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

마지막 재판이 종료된 후, 만약 3 명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에서 1 명의 중재인이 사망하거나 면직 등의 사유로 합의 및/혹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2 명의 중재인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중재인의 교체를 청구할 수 있다. 양측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거친 후, 2 명의 중재인은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상기 상황을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3 절 심리(审理)

제 35 조 심리 방식

1.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재판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중재재판부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며, 양측 당사자에게 합리한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중재재판부는 법정을 열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단, 양측 당사자가 약정하고 중재재판부의 동의를 거쳤거나, 중재재판부에서 법정을 열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서면 문서만으로 심리할 수 있다.

3.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질문 또는 변론의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4. 중재재판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5.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재판부는 필요시 사건 심리의 절차 명령 발표, 질문 목록 발표, 심리 범위서 작성, 사전 심리 회의 개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재재판부의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주심 중재인은 단독으로 중재 사건의 절차 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6 조 법정 심리 장소

1. 당사자들이 재판 장소를 약정한 경우, 중재 사건의 재판 심리는 약정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단, 본 규칙 제 85 조 제 3 조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제외한다.

2.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위원회 중재원 또는 그 분회/중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건은 베이징 또는 분회/중재센터 소재지에서 심리해야 한다. 중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기타 장소에서 법정을 열어 심리할 수도 있다.

제 37 조 개정 심리

1. 법정을 열어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중재재판부는 처음 법정을 열 날짜를确定的한 후 개정 20 일 전에 개정 날짜를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개정 통보를 받은 후 5 일 내에 서면으로 개정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연기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상기 제 1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기 신청의 접수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3. 재차 법정을 열어 심리하는 날짜 및 연기 후 법정을 열어 심리하는 날짜에 관한 통보 및 그 연기 신청은 상기 제 1 조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법정을 열어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 및 그들의 중재 대리인은 재판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타 중재 참여자의 참가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중재재판부와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 참여자 외의 인원은 출석할 수 없다.

5. 중재재판부는 각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개정에 현장 출석 할 것인지, 원격 비디오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적절한 전자 통신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개정 시설 및 원격 비디오 개정에 필요한 행정 및 물자 지원을 책임한다.

제 38 조 기밀

1. 중재재판부의 사건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양측 당사자가 공개 심리를 요구할 경우, 중재재판부에서 공개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2. 비공개 심리 사건의 경우, 양측 당사자 및 그들의 중재 대리인, 중재인, 증인, 통역, 중재재판부의 자문 전문가 및 지정 감정인, 그리고

기타 관련 인원은 모두 사건의 실체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결석 심리

1.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거나, 법정 심리 과정에 중재재판부의 허락 없이 중도에 퇴장할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중재재판부의 반소 심리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거나, 법정 심리 과정에 중재재판부의 허락 없이 중도에 퇴장할 경우, 중재재판부는 결석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피신청인이 반소를 제기한 경우, 반소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40 조 재판 기록

1. 법정 심리 시, 중재재판부는 서면 재판 기록 및/혹은 음성 및 영상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중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 요점을 작성하고, 당사자 및/혹은 대리인, 증인 및/혹은 기타 관련 인원이 재판 기록 또는 재판 요점에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2.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여자는 자신의 진술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중재재판부가 그 정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 사항은 기록에 남겨야 한다.

3. 재판 기록, 재판 요점, 음성 및 영상 기록은 중재재판부의 확인을 위해 제공된다.

4.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속기사를 초빙하여 재판 기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제 41 조 증거 제시

1. 당사자는 자신의 신청, 답변 및 반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 변론 및 방어 요점에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중재재판부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기한을 규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중재재판부는 접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당사자가 증거 제출 기한 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제출 기한 만료 전에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3.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제출했지만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증거 제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후과를 책임진다.

4.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할 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증거 지침》(이하 간칭

“증거 지침”이라고 한다)을 적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이 《증거 지침》은 본 규칙의 구성 부분은 아니다.

제 42 조 증거 검토

1.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혹은 합의를 이룬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에서 심리하는 사건의 증거는 재판 때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 증거를 검토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심리하는 사건의 증거 자료에 대해 혹은 법정을 연 후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당사자가 서면 증거 검토에 동의한 경우, 서면 증거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서면 증거 검토 시, 당사자는 중재재판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 증거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43 조 중재재판부의 사실 조사 및 증거 수집

1. 중재재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2. 중재재판부는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통보 후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중재재판부의 사실 조사 및 증거 수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재재판부에서 조사하여 수집한 증거는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4 조 전문가 보고서 및 감정 보고서

1. 중재재판부는 사건의 전문적인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할 수 있다. 전문가와 감정인은 중국 또는 외국의 기관이나 개인일 수 있다.

2. 중재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전문가나 감정인의 검토, 검사 또는 감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 문서, 재산 또는 실물을 제공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한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전문가 보고서와 감정 보고서 사본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쪽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중재재판부가 요구할 경우, 전문가나 감정인은 재판에 참여해야 하며, 중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작성한 보고서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제 45 조 절차 중지

1.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중재 절차 중지를 청구하거나 중재 절차 중단이 필요한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재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2. 중재 절차 중지 사유가 사라지거나 절차 중지 기한이 만료된 후, 중재 절차는 재개된다.

3. 중재 절차의 중지 및 재개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결정한다.

제 46 조 신청 철회 및 사건 취하

1. 당사자는 모든 중재 청구 또는 모든 중재 반소를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하더라도 중재재판부에서 피신청인의 중재 반소 청구를 계속 심리하고 판결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신청인이 모든 중재 반소를 철회하더라도 중재재판부에서 신청인의 중재 청구를 계속 심리하고 판결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당사자 본인의 사유나 관련 법률 규정으로 인해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중재 청구 및 반소가 모두 철회된 경우, 사건을 취하할 수 있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에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사건 취하를 결정한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에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 중재재판부가 사건 취하를 결정한다.
4. 상기 제 3 조항 및 본 규칙 제 6 조 제 7 조항에서 기술한 사건 취하 결정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47 조 중재와 조정을 상호 결합

1. 양측 당사자가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한쪽 당사자가 조정 의사를 밝히고 중재재판부를 통해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재재판부는 중재 절차 진행 과정에 사건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양측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도 있다.
2. 중재재판부는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3. 조정 과정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종료할 것을 제기하거나 중재재판부에서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재판부는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4. 양측 당사자가 중재재판부의 조정을 거쳐 화해하거나 스스로 화해한 경우, 화해 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5. 당사자가 조정을 거치거나 또는 스스로 화해 협의를 이룬 경우, 중재 청구 또는 반소를 철회할 수 있으며, 중재재판부에 화해 협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판결서 또는 조정서를 작성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당사자가 조정서를 작성해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조정서에는 중재 청구와 당사자 간의 서면 화해 협의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 양측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7.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재재판부는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8.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나 중재재판부의 주관 하에 조정을 진행하고 싶지 않은 경우,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후,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를 협조하여 적절한 방식과 절차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9. 조정이 실패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도 이후의 중재 절차, 사법 절차 또는 기타 절차에서, 상대방 당사자나 중재재판부가 조정 과정에 제시한 의견, 주장, 진술, 인정하거나 부정한 건의나 주장을 자신의 청구, 답변 또는 반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10. 당사자가 중재 절차 개시 전에 스스로 또는 조정을 거쳐 당사자 간 화해 협의를 달성한 경우, 중재위원회가 중재한 중재 협의서 및 화해 협의서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재판부를 구성하여, 화해 협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중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단독 중재인을 지정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하며, 중재재판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다. 구체적 절차와 기한은 본 규칙의 기타 조항에서 규정한 절차와 기한에 제한받지 않는다.

제 48 조 제 3 자 자금 지원

1. 제 3 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당사자는 자금 지원 계약서를 체결한 후 지체없이 제 3 자 자금 지원의 사실, 경제적 이익, 제 3 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을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이를 관련 당사자와 중재재판부에 전달해야 한다. 중재재판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 3 자 자금을 지원받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2. 중재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중재재판부는 제 3 자 자금 지원의 존재 여부와 당사자가 제 1 조항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제 49 조 중간 판결

1. 중재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당사자가 청구하고 중재재판부가 동의를 한 경우, 중재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중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간 판결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중재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중재재판부의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0 조 조기 기각 절차

1. 당사자는 중재 청구 또는 반소가 명백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명백히 중재재판부의 관할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중재 청구 또는 반소에 대해 조기 기각을 신청할 수 있다(이하 간칭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이라 한다).

2. 당사자는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중재재판부는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을 청구한 한쪽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시한 이유는 조기 기각 절차의 실시가 전체 중재 절차를 가속화함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로 당사자가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을 남용하여 중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당사자가 조기 기각 신청을 제출하더라도 중재재판부가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제출해야 한다. 중재재판부가 별도로 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은 늦어도 답변서 또는 반소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4. 중재재판부는 양측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기 기각 절차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중재재판부는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60 일 내에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그 이유를 첨부해야 한다. 중재재판부의 청구에 따라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6. 중재재판부에서 조기 기각 절차 신청을 지지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 중재재판부가 기타 중재 청구 및 반소를 계속 심리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 장 판 결

제 51 조 판결 기한

1. 중재재판부는 재판부를 구성한 후 6 개월 내에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2. 중재재판부의 청구에 따라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절차 중지 기간은 상기 제 1 조항에서 규정한 판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52 조 판결

1. 중재재판부는 사실과 계약에 근거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국제 관례를 참고하면서 공평하고 합리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당사자 간에 사건의 실체에 적용할 법에 대해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을 따른다.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법률의 강제적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중재재판부에서 사건의 실체에 적용해야 할 법률 또는 법규를 결정한다.

3. 중재재판부는 판결문에 중재 청구, 분쟁 사실, 판결 이유, 판결 결과, 중재 비용 부담, 판결 날짜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 당사자 간의 화해 계약 내용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재재판부는 판결문에 당사자가 판결을 이행할 구체적 기한과, 기한을 넘겨 이행 시 져야 할 책임을 명확히 기재할 권한이 있다.

4. 판결문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의 판결은 전체 중재인 또는 다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 소수 중재인의 서면 의견은 기록에 첨부되어야 하며, 판결문 뒤에 첨부할 수 있다. 단, 소수 중재인의 서면 의견은 판결문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다.

6. 중재재판부가 다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판결은 주심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 기타 중재인의 서면 의견은 기록에 첨부되어야 하며, 판결문 뒤에 첨부할 수 있다. 단, 기타 중재인의 서면 의견은 판결문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다.

7. 판결이 주심 중재인의 의견 또는 단독 중재인의 의견에 의해 내려지고, 그들이 판결문에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문은 응답 다수의 중재인이 서명해야 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중재인은 판결문에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서명을 안 할 수도 있다. 중재인의 전자 서명은 수기 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8. 판결문이 내려진 날짜가 즉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이다.

9. 판결은 최종적이며, 양측 당사자 모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10. 양측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판결문은 종이 문서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거나 중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문은 전자 문서 형태로 송달할 수도 있다.

제 53 조 부분적 판결

1. 중재재판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청구하고 중재재판부에서 동의를 한 경우, 중재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특정 청구 사항에 대해 부분적 판결을 먼저 내릴 수 있다. 부분적 판결은 최종적이며,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2. 한쪽 당사자가 부분적 판결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중재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재재판부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4 조 판결문 초안의 심사

중재재판부는 판결문에 서명하기 전, 판결문 초안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재재판부의 독립적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중재위원회는 판결문에 관계되는 일부 문제에 있어 중재재판부의 주의를 요할 수 있다.

제 55 조 비용 부담

1. 중재재판부는 판결문에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중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중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판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중재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판결문에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당사자가 사건 처리과정에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재판부는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의 사건 처리과정에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구체적으로 사건의 판결 결과, 복잡성 정도, 승소한 당사자 및/혹은 대리인의 실제 업무량 및 사건의 분쟁 금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 56 조 판결문의 정정

1. 중재재판부는 판결문 발송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판결문의 작성, 인쇄, 계산에 있어서의 오류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오류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정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30 일 내에 판결문의 작성, 인쇄, 계산에 있어서의 오류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오류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중재재판부에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류가 확인될 경우, 중재재판부는 서면 신청을 받은 후 30 일 내에 서면으로 정정해야 한다.
3. 상기 서면 정정은 판결문의 구성 부분으로 되며, 본 규칙 제 52 조 제 4 조항부터 제 10 조항까지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57 조 보충 판결

1. 판결문에 중재 청구/반소에 대한 누락된 판결 사항이 있을 경우, 중재재판부는 판결문 발송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스스로 보충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30 일 내에, 서면으로 중재재판부에 판결문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 보충 판결을 내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누락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중재재판부는 서면 신청을 받은 후 30 일 내에 보충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이 보충 판결은 판결문의 구성 부분으로 되며, 본 규칙 제 52 조 제 4 조항부터 제 10 조항까지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58 조 판결의 이행

1. 당사자는 판결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중재 판결을 이행해야 하며, 판결문에 이행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2. 한쪽 당사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한쪽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판결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 장 간이 절차

제 59 조 간이 절차의 적용

1.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 금액이 500 만 위안 이하인 경우, 또는 분쟁 금액이 500 만 위안을 초과하지만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른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양측 당사자가 간이 절차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간이 절차를 적용한다.

2. 분쟁 금액이 없거나 또는 분쟁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사건의 복잡성 정도, 이익의 규모와의 관련성 및 기타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이 절차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제 60 조 사건의 접수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본 규칙 제 12 조에 규정된 접수 조건에 부합하고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측 당사자에게 중재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 61 조 중재재판부의 구성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이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본 규칙 제 28 조에 따라 단독 중재재판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제 62 조 답변서 및 반소

1. 피신청인은 중재 고지서를 받은 후 20 일 내에 답변서 및 증거
자료와 기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반소가 있는 경우에도 이
기한 내에 반소장 및 증거 자료와 기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인은 반소 접수 고지서를 받은 후 20 일 내에 피신청인의
반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상기 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중재재판부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결정한다.

제 63 조 심리 방식

중재재판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와 증거만으로 서면 심리를 진행하거나 법정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64 조 법정 심리

1. 법정 심리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중재재판부는 첫 개정 날짜를 확정한 후, 개정 15 일 전까지 당사자들에게 개정 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개정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후 3 일 내에 서면으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기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상기 제 1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연기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연기 신청 접수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3. 재차 개정 심리 날짜 및 연기 후의 개정 심리 날짜의 통보 및 연기 신청은 상기 제 1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65 조 판결을 내리는 기한

1. 중재재판부는 구성된 후 3 개월 내에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2. 중재재판부의 청구에 따라,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절차 중지 기간은 상기 제1조항에서 규정한 판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66 조 절차 변경

중재 청구의 변경 또는 반소의 제기는 간이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경된 중재 청구 또는 반소의 분쟁 금액이 500 만 위안 이상인 경우,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거나 중재재판부가 간이 절차를 일반 절차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간이 절차를 적용한다.

제 67 조 본 규칙의 기타 조항의 적용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장 국내 중재에 관한 특별 규정

제 68 조 본 장의 적용

1. 국내 중재 사건은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규칙 제 59 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국내 중재 사건은 제 4 장 간이 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9 조 사건의 접수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신청인의 중재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본 규칙 제 12 조에서 규정한 접수 조건에 부합하며 국내 중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측 당사자에게 중재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 70 조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재판부는 본 규칙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제 71 조 답변 및 반소

1. 피신청인은 중재 통보를 받은 후 20 일 내에 답변서 및 관련 증거 자료와 기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반소가 있는 경우에도 이 기한 내에 반소장 및 관련 증거 자료와 기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인은 반소 접수 통보를 받은 후 20 일 내에 피신청인의 반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3.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상기 기한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중재재판부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중재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결정한다.

제 72 조 법정 심리

1. 법정을 열어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중재재판부는 첫 개정 날짜를
확정한 후, 당사자들에게 개정 15 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로 개정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고지서를
받은 후 3 일 내에 서면으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기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상기 제 1 조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연기 신청 접수 여부는
중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3. 재차 개정 심리 날짜 및 연기 후 개정 심리 날짜의 통보 및 연기
신청은 상기 제 1 조항에 규정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73 조 재판 기록

1. 중재재판부는 재판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여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재판부에서 정정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정 신청을 재판 기록에 남겨야 한다.

2. 재판 기록은 중재인, 기록 담당자,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제 74 조 판결을 내리는 기한

1. 중재재판부는 구성된 후 4 개월 내에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2. 중재재판부에서 청구하고,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절차 중지 기간은 상기 제 1 조항에서 규정한 판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75 조 본 규칙의 기타 조항의 적용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본 규칙의 제 6 장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 6 장 홍콩 중재에 관한 특별 규정

제 76 조 본 장의 적용

1. 중재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를 설립한다. 본 장은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중재 사건에 적용된다.

2. 당사자가 분쟁 사건을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 제출하여 중재하거나 또는 분쟁 사건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홍콩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한 경우,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 중재 신청을 접수하고 사건을 관리한다.

제 77 조 중재지 및 절차 적용 법률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건의 중재지는 홍콩으로 하며, 중재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은 홍콩 중재법으로 하고, 중재 판결은 홍콩 판결로 한다.

제 78 조 관할권 결정에 관한 사항

당사자는 중재 합의 및/혹은 중재 사건의 관할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첫 실질적인 답변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중재재판부는 중재 합의의 존재와 효력 및 중재 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 79 조 중재인의 선정 또는 지정

중재위원회는 홍콩중재센터에서 관리하는 사건에서, 현행 중재인 명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당사자는 중재위원회 중재인 명단 외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선정된 중재인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80 조 임시 조치 및 긴급 구제

1.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재판부는 적절한 임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2.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당사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긴급 중재인 절차》(본 규칙 부록 3)에 따라 긴급 임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1 조 판결문의 도장

판결문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 도장을 찍는다.

제 82 조 중재 비용

본 장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사건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 위원회 중재 비용 표준(3)》(본 규칙 부록 2)이 적용된다.

제 83 조 본 규칙의 기타 조항의 적용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칙의 기타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본 규칙 제 5 장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 7 장 부 칙

제 84 조 중재 언어

1. 당사자 간에 중재 언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을 따른다.

2. 당사자들이 중재 언어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를 중재 언어로 한다. 중재위원회에서는 계약에 사용된 언어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1 개 또는 1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중재 절차에서 사용할 중재 언어를 다시 확정할 수 있다.

3. 중재재판부가 재판을 할 때,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 증인이 통역이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통역사를 제공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통역사를 제공할 수도 있다.

4.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 및 증빙 자료에 대해 중재재판부 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중국어 번역본 또는 기타 언어 번역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5 조 중재 비용 및 실제 비용

1. 중재위원회는 중재 비용 표준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중재 비용을 수취하는 외에 또 당사자로부터 기타 별도의 합리적인 실제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실제 비용은 중재인이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 보수, 출장비, 식사 및 숙박비, 속기록 작성비 및 중재재판부에서 초빙한 전문가, 감정인, 통역사 보수 등을 포함한다.

중재인의 특별 보수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하거나 중재인이 제안하여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나서서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동의를 거친 후 시간당 요금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비용 표준(3)』(본 규칙 부록 2) 제 3 조 제 2 조항 “중재원 보수 및 비용(시간당 요금 기준)”의 기준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2.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선정한 중재인의 특별 보수, 출장비, 식사 및 숙박비 등의 실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3.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중재센터의 관할 구역 외에서 법정 심리를 약정한 경우, 이로 인한 출장비, 식사 및 숙박비 등 실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련 실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중재센터 소재지에서 재판한다.

4. 당사자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중재 언어로 약정하거나 또는 본 규칙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이지만 당사자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을 약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합리적인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5. 중재위원회에서 당사자에게 본 규칙 제 2 조 제 7 조항에서 규정한 임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및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양측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중재 비용 수취를 결정하고, 동시에 당사자에게 규정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통보한다. 당사자가 중재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임시 중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관련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86 조 책임 제한

중재위원회 및 그 직원, 중재인, 긴급 중재인, 그리고 중재 절차 진행과정에 중재재판부에서 초빙한 관련 인원은 본 규칙에 따라 진행한 모든 중재 관련 행위(어떤 과실이나, 작위 및 부작위 등을 포함하여)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민사책임도 지지 않으며 또한 증언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단, 중재에 적용되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87 조 규칙의 해석

1. 본 규칙의 조항 제목은 조항 의미 해석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본 규칙의 해석은 중재위원회가 책임진다.

제 88 조 규칙의 시행

본 규칙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이 시행되기 전,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중재센터에서 관리하던 사건은 여전히 사건 접수 시 적용되던 중재 규칙이 적용되며,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본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부록 1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중재센터 명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주소: 베이징시 시청구 화피창 후통 2 호 국제상회 빌딩 6 층

우편번호: 100035

전화: 010-82217788

팩스: 010-82217766 / 010-64643500

이메일: info@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화난분회

주소: 광둥성 선전시 푸톈구 중신사로 1 호 자리건설광장 2 동 12 층

우편번호: 518046

전화: 0755-88286848

팩스: 0755-88286861

이메일: infosz@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sc.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하이분회 (상하이증권선물금융

국제중재센터)

주소: 상하이시 푸둥 신구 스지다루 1198 호 스지후광장 1 동 16 층

우편번호: 200122

전화: 021-60137688

팩스: 021-60137689

이메일: infosh@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shanghai.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텐진분회 (텐진국제경제금융 중재센터)

주소: 텐진시 허둥구 루위로와 다즈구 8 호로 교차로 텐진 완다센터

오피스텔 만하이빌딩 18 층 1803/1804 호

우편번호: 300170

전화: 022-66285688

팩스: 022-66285678

이메일: tianjin@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tj.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시난분회

주소: 충칭시 장베이구 장베이쭈이쭈셴광장 8 호 리판센터 1 동 15-

5, 15-6

우편번호: 400024

전화: 023-67860011

팩스: 023-67860022

이메일: cietac-sw@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sw.org.cn/>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

주소: 홍콩 중환쇄창가 11 호 진정센터 서관 5 층 503 호

전화: 852-25298066

팩스: 852-25298266

이메일: hk@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hk.org.cn>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저장분회

주소: 저장성 항저우시 옌안로 2 경 빌딩 A 동 10 층

우편번호: 310006

전화: 0571-28169009

팩스: 0571-28169010

이메일: zj@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zj.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후베이분회

주소: 후베이성 우한시 우창구 샤오홍산 동로 34 호 후베이성
과학기술 창업 빌딩 B 동 11 층

우편번호: 430070

전화: 027-87639292

팩스: 027-87639269

이메일: hb@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hb.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푸젠분회(푸젠자유무역구 중재센터)

주소: 푸젠성 푸저우시 타이강구 민장베이 CBD 상반가 357 호
양광청 시대 광장 16 층 1602 호

우편번호: 350002

전화: 0591-87600275

팩스: 0591-87600330

이메일: cietac-fj@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fj.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장쑤중재센터

주소: 장쑤성 난징시 쉬안구 창장로 188 번지 더지 빌딩 31 층

우편번호: 210018

전화: 025-69515388

팩스: 025-69515390

이메일: js@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js.org.cn>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실크로드중재센터

주소: 산시성 시안시 가오신구 장바쓰로 20 번지 선저우디지털산업단지
5 동 22 층

우편번호: 710075

전화: 029-81119935

팩스: 029-81118163

이메일: infosr@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쓰촨분회(청두국제중재센터)

주소: 쓰촨성 청두시 가오신구 텐푸대로 중단 1577 번지 중국-유럽센터
12 층

우편번호: 610041

전화: 86-28-83180751

팩스: 86-28-83199659

이메일: sichuan@cietac.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산둥분회

주소: 산둥성 지난시 리샤구 룡아오서로 1 호 인평차이푸광장 2 호

빌딩(B 동) 301, 304 호

우편번호: 250102

전화: 0531-81283380

팩스: 0531-81283390

이메일: sdinfo@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sd.org.cn>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유럽중재센터

주소: Mariahilfer Str.47/1/3, 1060 Vienna, Austria

전화: + 43 (1) 581 4744

팩스: + 43 (1) 581 4744 10

이메일: infoeu@cietac.org

웹사이트: <https://www.cietac-eu.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북미중재센터

이메일: infous@cietac.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하이난중재센터

주소: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메이란구 귀성대로 15A 글로벌무역창구

빌딩 1306 호

우편번호: 570100

전화: 0898-3638 8800 / 0898-3638 8877

팩스: 0898-3638 8877

이메일: hn@cietac.org

웹사이트: <http://www.cietac.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숭안분회

주소: 허베이성 숭안자유무역시험구 종합관리서비스센터 (건설 중)

전화: 86 10 82217788

이메일: infoxa@cietac.org

부록 2.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비용 표준 (1)

(본 비용 표준은 본 중재 규칙 제3조 제2조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중재 사건에 적용된다.)

분쟁 금액(인민폐)	중재 비용(인민폐)
1,000,000 위안 이하	분쟁 금액의 4%, 최소 10,000 위안 이상
1,000,001 위안--2,000,000 위안	40,000 위안+ 분쟁 금액 1,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3.5%
2,000,001 위안--5,000,000 위안	75,000 위안+ 분쟁 금액 2,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2.5%
5,000,001 위안--10,000,000 위안	150,000 위안+ 분쟁 금액 5,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1.5%
10,000,001 위안--100,000,000 위안	225,000 위안+ 분쟁 금액 1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1%
100,000,001 위안--300,000,000 위안	1,125,000 위안+ 분쟁 금액 10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65%
300,000,001 위안--1,000,000,000 위안	2,245,000 위안+ 분쟁 금액 30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60%
1,000,000,001 위안-- 2,000,000,000 위안	6,625,000 위안+ 분쟁 금액 1,00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45%
2,000,000,001 위안 이상	11,125,000 위안+ 분쟁 금액 2,00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4%, 분쟁 금액 30 억 이상은 중재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

1. 중재 신청 시, 매 사건은 별도로 10,000 위안의 사건 접수 비용이 부과된다. 여기에는 중재 신청의 심사, 사건 등록, 컴퓨터 프로그램 입력 및 사용, 문서 정리 및 보관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2. 중재 비용 표준에 명시된 분쟁 금액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청구한 금액과 실제 분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중재 신청 시, 분쟁 금액을 미확정했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비용의 금액을 결정한다.
4. 수취하는 중재 비용이 외화인 경우, 본 중재 비용 표준의 규정에 따라 위안화와 동등한 수액의 외화를 수취한다.
5. 중재위원회는 본 중재 비용 표준에 따라 중재 비용을 수취하는 것 외에도 중재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별도의, 합리적인 실제 지출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비용 표준 (2)

이 비용 표준은 본 중재 규칙 제 3 조 제 2 조항 제 3 호에 규정된 중재 사건에 적용된다.

1. 사건 접수 수수료

분쟁 금액(인민폐)	사건 접수 수수료(인민폐)
100,000 위안 이하	분쟁 금액의 4%, 최소 100 위안 이상
100,001 위안--500,000 위안	4,000 위안+ 분쟁 금액 1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2%
500,001 위안--1,000,000 위안	12,000 위안+ 분쟁 금액 5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1%
1,000,001 위안--50,000,000 위안	17,000 위안+ 분쟁 금액 1,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5%
50,000,001 위안--300,000,000 위안	262,000 위안+ 분쟁 금액 5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48%
300,000,001 위안--1,000,000,000 위안	1,462,000 위안+ 분쟁 금액 30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46%
1,000,000,001 위안-- 2,000,000,000 위안	4,682,000 위안+ 분쟁 금액 1,00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42%
2,000,000,001 위안	8,882,000 위안+ 분쟁 금액 2,00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4%, 분쟁 금액 30 억 이상인 부분은 사건 접수 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음

2. 사건 처리 수수료

분쟁 금액(인민폐)	사건 접수 수수료(인민폐)
200,000 위안 이하	최소 6,000 위안 이상
200,001 위안--500,000 위안	6,000 위안+ 분쟁 금액 2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2%
500,001 위안--1,000,000 위안	12,000 위안+ 분쟁 금액 5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1.5%
1,000,001 위안--5,000,000 위안	19,500 위안+ 분쟁 금액 1,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45%
5,000,001 위안--20,000,000 위안	37,500 위안+ 분쟁 금액 5,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3%
20,000,001 위안--100,000,000 위안	82,500 위안+ 분쟁 금액 2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2%
100,000,001 위안--1,000,000,000 위안	242,500 위안+ 분쟁 금액 10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1%
1,000,000,001 위안 이상	1,142,500 위안+ 분쟁 금액 1,000,000,000 위안 이상 부분의 0.03%, 분쟁 금액 30 억 이상인 부분은 사건 처리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

1. 중재 비용 표준의 분쟁 금액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한 금액과 실제 분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제 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중재 신청 시, 분쟁 금액을 확정하기 않았거나 상황이 특별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에 관련된 권익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사전에 수취할 중재 비용 금액을 확정한다.

3. 중재위원회는 본 중재 비용 표준에 따라 중재 비용을 수취하는 것 외에도 중재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별도의, 합리적인 실제 지출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비용 표준 (3)

본 비용 표준은 본 중재 규칙 제 6 장에 규정된, 중재위원회 홍콩중재 센터가 관리하는 중재 사건에 적용된다.

1. 사건 접수 수수료

신청인이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 중재 신청을 청구할 때, 사건 접수 수수료로 홍콩 달러 8,000 원을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은 중재 신청의 심사, 사건 등록,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문서 보관 및 인건비에 사용된다. 사건 접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기관 관리비

(1) 기관 관리비 표준

분쟁 금액(홍콩 달러)	기관 관리비(홍콩 달러)
500,000 원 이하	25,000 원
500,001 원--1,000,000 원	25,000 원+ 분쟁 금액 500,000 원 이상 부분의 2%
1,000,001 원-- 5,000,000 원	35,000 원+ 분쟁 금액 1,000,000 원 이상 부분의 1.6%
5,000,001 원--10,000,000 원	99,000 원+ 분쟁 금액 5,000,000 원 이상 부분의 0.8%
10,000,001 원--20,000,000 원	139,000 원+ 분쟁 금액 1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5%
20,000,001 원--40,000,000 원	189,000 원+ 분쟁 금액 2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2%

40,000,001 원--80,000,000 원	229,000 원+ 분쟁 금액 4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15%
80,000,001 원--400,000,000 원	289,000 원+ 분쟁 금액 8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05%
400,000,001 원--1,000,000,000 원	449,000 원+ 분쟁 금액 40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02%
1,000,000,001 원 이상	569,000 원+ 분쟁 금액 1,00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005%, 최고 홍콩 달러 60 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

(2) 기관 관리비에는 사건 비서의 업무 보수,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센터의 법정 사용 비용이 포함된다.

(3) 분쟁 금액을 확정할 때, 중재 청구와 중재 반소 청구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분쟁 금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상황이 특별한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관리비를 확정한다.

(4) 기관 관리비 표준에 따른 관리비 외에,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는 《중재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별도의 합리적인 실제 지출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이 지출에는 번역비 및 기록 비용,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센터의 법정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재판을 하는데 발생하는 장소 대여 비용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5) 사건 접수 수수료 및 기관 관리비가 홍콩 달러가 아닌 경우,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는 기관 관리비 표준의 규정에 따라 홍콩 달러와 동등한 금액의 외화를 수취한다.

3. 중재인 보수 및 비용

(1) 중재인 보수 및 비용 (분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① 중재인 보수 표준

분쟁 금액	중재인 보수(중재인 1 인당, 홍콩 달러)	
(홍콩 달러)	최저	최고
500,000 원 이하	15,000 원	60,000 원
500,001 원-- 1,000,000 원	15,000 원+ 분쟁 금액 500,000 원 이상 부분의 2.30%	60,000 원+ 분쟁 금액 500,000 원 이상 부분의 8.50%
1,000,001 원-- 5,000,000 원	26,500 원+ 분쟁 금액 1,000,000 원 이상 부분의 0.80%	102,500 원+ 분쟁 금액 1,000,000 원 이상 부분의 4.3%
5,000,001 원-- 10,000,000 원	58,500 원+ 분쟁 금액 5,000,000 원 이상 부분의 0.60%	274,500 원+ 분쟁 금액 5,000,000 원 이상 부분의 2.30%
10,000,001 원-- 20,000,000 원	88,500 원+ 분쟁 금액 1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35%	389,500 원+ 분쟁 금액 10,000,000 원 이상 부분의 1.00%
20,000,001 원-- 40,000,000 원	123,500 원+ 분쟁 금액 2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20%	489,500 원+ 분쟁 금액 2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65%
40,000,001 원-- 80,000,000 원	163,500 원+ 분쟁 금액 4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07%	619,500 원+ 분쟁 금액 4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35%
80,000,001 원-- 200,000,000 원	191,500 원+ 분쟁 금액 8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05%	759,500 원+ 분쟁 금액 8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25%

200,000,001 원-- 400,000,000 원	251,500 원+ 분쟁 금액 20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03%	1,059,500 원+ 분쟁 금액 20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15%
400,000,001-- 600,000,000 원	311,500 원+ 분쟁 금액 40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02%	1,359,500 원+ 분쟁 금액 40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12%
600,000,001-- 750,000,000 원	351,500 원+ 분쟁 금액 60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01%	1,599,500 원+ 분쟁 금액 60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10%
750,000,001 원 이상	366,500 원+ 분쟁 금액 75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008%	1,749,500 원+ 분쟁 금액 750,000,000 원 이상 부분의 0.06%

② 본 비용표준 외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의 보수는 중재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상기 표준에 따라 산정하여 수취하며, 중재인의 비용은 중재인이 중재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전부의 합리적인 실제 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③ 당사자들이 모두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가 특수한 상황에서 결정한 경우, 중재인의 보수는 본 중재인 보수 표준에 명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서确定的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 미리 납부해야 하며,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의 동의를 거쳐, 당사자는 적절한 비율에 따라 할부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의 지급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⑤ 분쟁 금액을 확정할 때, 중재 청구와 중재 반소의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분쟁 금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또는 상황이 특수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인의 보수를 확정한다.

(2) 중재인 보수와 비용(시간당 비용을 기준으로)

① 당사자 각자가 서면으로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시간당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중재인은 중재를 위해 합리적으로 투입한 모든 업무에 대해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하여 보수를 받는다. 중재인의 비용에는 중재인의 중재 활동 과정에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실제 지출이 포함된다.

② 당사자가 긴급 중재인 절차를 신청한 경우, 긴급 중재인의 보수는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하여 수취한다.

③ 한쪽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은 해당 당사자와 선정된 중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단독 중재인과 주심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은 해당 중재인과 각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을 협상하여 확정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중재인이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했을 경우, 해당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은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긴급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은 중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④ 협의하여 결정했거나 또는 미리 확정된 중재인의 시간당 비용은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중재 신청을 제출한 당일 중재위원회 웹사이트에 공지된 비용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단, 당사자들이 모두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중재위원회가 특수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린 경우, 중재인은 시간당 비용 상한을 초과하여 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⑤ 당사자는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 결정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 보수와 비용 지급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3) 기타 사항

①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보수 및 모든 납부해야 할 비용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중재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중재 판결을 유보할 권한을 가진다.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기 보수와 비용을 전액 납부한 후,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는 중재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중재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한다.

②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이 홍콩 달러가 아닌 외화로 수취될 경우,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서는 본 비용 표준의 규정에 따라 홍콩 달러와 동등한 수액의 외화를 수취한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긴급 중재인 절차

제 1 조 긴급 중재인 절차의 신청

1. 당사자가 긴급 임시 구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 또는 양측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긴급 중재인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2. 긴급 중재인 절차를 신청하는 당사자(이하 간칭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사건을 관리하는 중재위원회 중재인 또는 분회/중재센터 중재원에 긴급 중재인 절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긴급 중재인 절차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당사자의 이름 및 기본 정보

(2) 이 신청을 야기한 기초 분쟁 설명 및 긴급 임시 구제를 신청하는 이유

(3) 신청한 긴급 임시 구제 조치 및 긴급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이유

(4) 긴급 임시 구제 신청에 필요한 기타 필수 정보

(5) 긴급 중재인 절차에 적용될 법률과 언어에 대한 의견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의 근거로 되는 증거 자료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자료는 중재 협의 및 기초 분쟁을 야기한 관련 계약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신청서 및 증거 자료 등 서류는 각 3 부씩 제출해야 하며,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에 상응하게 부수를 늘려야 한다.

4. 신청인은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5. 당사자들이 중재 언어를 약정한 경우, 긴급 중재인 절차의 언어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중재 언어로 정한다. 당사자들이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절차에 적용될 언어를 확정한다.

제 2 조 신청 접수 및 긴급 중재인의 지정

1.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중재 협의서 및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중재위원회 중재원이 예비 심사를 거쳐 긴급 중재인 절차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긴급 중재인 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은 신청서 및 신청인이 미리 납부한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을 수령한 후 1 일 내에 긴급 중재인을 지정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긴급 중재인을 지정한 후,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즉시 접수 고지서 및 신청인의 신청 서류를 지정된 긴급 중재인과 긴급 임시 구제 조치 대상인 피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동시에 접수 고지서를 다른 당사자들과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복사본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 3 조 긴급 중재인의 공개 및 회피

1. 긴급 중재인은 어느 한측 당사자도 대표하지 않으며, 각 당사자들과 독립적이어야 하고, 각 당사자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2. 긴급 중재인은 중재인으로 지정받는 동시에 선언서에 서명해야 하며, 중재위원회 중재원에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이나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긴급 중재인 절차 진행 중에 다른 무언가 공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 중재인은 즉시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3. 긴급 중재인의 선언서 및/혹은 공개한 정보는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모든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4. 당사자는 긴급 중재인의 선언서 및/혹은 서면 공개서를 받은 후, 공개된 사실이나 상황을 이유로 해당 중재인의 회피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긴급 중재인의 서면 공개서를 받은 2 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긴급 중재인이 공개한 사항을 이유로 다시 회피를 신청할 수 없다. 그 후에 회피를 요구할 사유를 알게 된 경우, 회피를 요구할 사유를 알게 된 후 2 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늦어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5. 당사자는 지정된 긴급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합리적인 회의가 생겼을 경우, 서면으로 해당 긴급 중재인의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회피를 요구하는 이유 및 근거를 설명해야 하고 또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6. 긴급 중재인의 회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회피 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을 내린 후 1 일 내에 새로 긴급 중재인을 지정하고, 결정을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긴급 중재인 회피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원래의 긴급 중재인이 계속해서 직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개 및 회피 절차는 새로 지정된 긴급 중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 중재인은 해당 사건의 중재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지정되거나 선정될 수 없다.

제 4 조 긴급 중재인 절차 소재지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의 중재지는 긴급 중재인 절차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한다. 사건의 중재지를 확정하는 데는 본 중재 규칙 제 7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조 긴급 중재인 절차

1. 긴급 중재인은 가능한 한 지정된 후 2 일 내에 긴급 중재인 절차 사항을 정리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긴급 중재인은 긴급 구제의 유형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 긴급 중재인은 긴급 구제 신청 당사자에게 긴급 구제의 전제 조건으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긴급 중재인의 권한 및 긴급 중재인 절차는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는 날에 종료된다.

4. 긴급 중재인 절차는 당사자가 적용 법률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6 조 긴급 중재인의 결정

1. 긴급 중재인은 필요한 긴급 임시 구제 조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결정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긴급 중재인의 결정은 긴급 중재인이 지정된 후 15 일 내에 내려져야 한다. 긴급 중재인이 결정 기한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은 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만 비준한다.

3. 긴급 중재인의 결정에는 긴급 구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긴급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중재원 또는 그 분회/중재센터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4. 긴급 중재인의 결정은 양측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집행지의 국가나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청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긴급 중재인 또는 후일 구성된 중재재판부는 긴급 중재인의 결정을 수정,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5. 긴급 중재인이 긴급 임시 구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긴급 임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긴급 중재인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6. 긴급 중재인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1) 긴급 중재인 또는 중재재판부가 긴급 중재인의 결정을 종료한 경우

(2) 중재위원회 중재원 원장이 긴급 중재인의 회피를 결정한 경우

(3) 중재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린 경우, 단 중재재판부가 긴급 중재인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

(4) 판결문이 내려지기 전 신청인이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한 경우

(5) 중재재판부가 긴급 중재인 결정이 내려진 후 90 일 내에 구성되지 못한 경우. 이 기한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연장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6) 중재재판부가 구성된 후, 중재 절차가 60 일 간 중단된 경우.

제 7 조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 부담

1. 신청인은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으로 30,000 위안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 비용에는 긴급 중재인의 보수와 중재위원회의 관리비가 포함된다. 중재위원회 중재원은 신청인에게 기타 별도의, 합리적인 실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홍콩중재센터에 긴급 임시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비용 표준 (3)》(중재 규칙 부록 2)의 규정에 따라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2. 각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의 비율은 긴급 중재인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 제시한다. 하지만, 중재재판부가 한쪽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비용 분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긴급 중재인 절차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종료된 경우, 중재위원회 중재원에서 신청인에게 환불할 긴급 중재인 절차 비용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 8 조 기타

중재위원회는 본 긴급 중재인 절차 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국무원에서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 명칭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재 규칙을 수정하는 데에 관한 답신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무원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명칭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비준합니다. 현재의 종속 관계는 변동이 없으며, 사건의 수리 범위는 국제경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입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 규칙은 귀 위원회가 우리 나라 법률과 우리 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 조약을 바탕으로, 그리고 국제 관례를 참조하여 현행 중재 규칙을 수정한 다음, 귀 위원회의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후, 공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중재 규칙은 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수정하기 바랍니다.

1988 년 6 월 21 일

국무원에서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명칭을 대외경제무역 중재위원회로 변경하는 데에 관한 통지

(1980 년 2 월 26 일)

1954 년 5 월 6 일 전중앙인민정부 정무원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제무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현재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명칭을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수리하는 사건의
범위는 중외합자경영기업 관련 업무, 외국기업의 투자와 공장 설립,
중외은행 간 상호 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외경제협력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위원 인원수는 업무 발전에 따라 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정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데에 관한 결정

정무원에서
내에

(1954 년 5 월 6 일 제 215 차 정무회의 통과)

대외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외 무역 관련 사회 단체 내에 중재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이하 간칭 '중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외무역 계약 및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며, 특히 외국 상호, 회사 또는 기타 경제 조직과 중국 상호, 회사 또는 기타 경제 조직 간의 분쟁을 해결한다.

2. 중재위원회는 양측 당사자 간 체결된 관련 계약, 협정 등에 근거하여, 대외무역 분쟁 사건을 수리한다.

3. 중재위원회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대외무역, 상업, 공업, 농업, 교통, 보험 및 기타 관련 분야와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15 명 내지 21 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 년이다.

4. 중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2 명을 선출한다.

5. 양측 당사자는 분쟁 사건의 중재를 신청할 때, 각자 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1 명을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양측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중재인 1 명을 선정하여 함께 사건을 심리하여도 되고, 양측 당사자가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1 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단독 중재인으로 사건을 심리해도 된다.

양측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또는 양측 당사자 간에 합의한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중재인도 중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주심 중재인을 선정해야 한다. 한쪽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대신 중재인을 지정한다. 선정되거나 지명된 중재인이 주심 중재인의 추천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대신 주심 중재인을 선임한다.

6. 양측 당사자의 어느 한 측도 중재위원회에 중재인 선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선정된 중재인은 다른 쪽의 중재인과 함께 주심 중재인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분쟁을 심리한다. 양측이 공동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인 선정을 위임하기로 합의했을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인 한 명을 지정하여 분쟁을 단독 심리할 수 있다.

7. 양측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서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을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또는 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8. 중재위원회에서는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와 관련된 자산, 재산권 등에 대해 임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9. 중재위원회는 중재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수속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금액은 분쟁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10. 중재위원회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서, 양측 당사자는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판결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11.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판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기한 내 집행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한쪽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률에 따라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12. 중재 절차에 관한 규칙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제정한다.